

|              |                    |
|--------------|--------------------|
| 의안번호         | 제 630 호            |
| 의 결<br>연 월 일 | 2017년 월 일<br>(제 회)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
|-------|--------------|
| 발 의 자 | 이양섭 의원 등 7인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양섭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630 |
|----------|-----|

발의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발의자 : 이양섭, 이광희, 김영주,  
박우양, 박종규, 윤은희,  
황규철

## 1. 폐지이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구성·기능 중복으로 인해 운영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3. 일부개정조례안 : 불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7-31호

라. 협의 : 정책기획관과 협의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인사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우수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1.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감과 도지사가 공동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으로 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건설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도지사가 3명 이내로 공동 추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참 고 자 료

###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11-17 조례 제 2958호

(일부개정) 2009-05-29 조례 제 3173호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 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발굴 등으로 21세기 미래사회를 주도할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범사회적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개정 2009. 5. 29>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2.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
3. 우수 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도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29>

② 협의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 5. 29>

1. 도의회 의장
2. 도교육감

3. 도교육위원회 의장
4. 도내 대학 총장 또는 학장
5. 민간사회단체장
6. 도내 경제단체장 및 기업인
7.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회장이 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 및 검토 등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29>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 5. 29, 2011. 12. 30>
-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 5. 29>

- ② 협의회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

으로 한다. <개정 2009. 5. 29>

제9조(고문) ① 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5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보상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조례 제3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시행한다.